

**2027 ~ 2028학년도 특성화교육[AI디지털]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계약 특수조건**

2026. 10. 15.



부산동성초등학교

2027 ~ 2028학년도 부산동성초등학교 특성화 교육[AI디지털] 용역업체 선정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부산동성초등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부산동성초등학교 2027 ~ 2028학년도 특성화교육[AI디지털] 운영 위탁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상대자 업무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동성초등학교의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제안
2.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진행 및 강사 관리
3.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제3조(운영시간) 정규수업 이외 부산동성초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장소 제공) 발주기관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에게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을 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

- ①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위탁 관리를 위해 업체 강사 중 학교담당자를 지정 후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진행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상호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프로그램 운영 공개, 보고회 등을 개최한다.
- ④ 프로그램 운영은 연중 10개월, 주 8시간, 시간당 40분 강의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운영시간은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으로 하되,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 시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⑥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강사선임 및 관리)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른 강사를 선임할 시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강사를 최초 선임 또는 교체할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인적 사항과 관련 서류 등을 문서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조치해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학부모의 요구 및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강사 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 하고, 특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발생할 경우 발생 즉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부산동성초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 운영을 위한 강사와 지원 인력의 복무 관리 및 노사문제에 책임을 진다.
- ⑤ 계약상대자는 부산동성초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시설 및 기자재 관리)

- ① 발주기관은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 운영을 위한 시설 및 환경 구축에 협조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과 관련한 기자재 작동 불능 등으로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운영 중 발생하는 하자 보수 및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책임을 진다.

제8조(학생 안전관리)

- 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협조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수강생의 출결을 확인하고, 결석 시 해당 내용을 발주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에는 사용한 장소의 정리정돈과 시설유지 및 수강생 복귀 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 ④ 계약상대자는 수강생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필요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7학년도 본교 재학생 수 680명, 2028학년도 본교 재학생 수 672명 기준으로 가입 필요).

제9조(강사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약약서)

- ① 계약상대자는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과 관련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 및 근로조건 이행 약약서(이하 “약약서”라 한다)의 약약내용인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률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약약서의 기초금액 대비 인건비 지급율에 있어 계약 전 산정한 기초금액에 대해 계약한 후 프로그램 폐강, 신설, 수강인원 변동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초금액을 아래 표에 따른 산식에 따라 재산정하여 인건비 지급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강사비는 재산정한 기초금액에 인건비 지급율의 값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건비 지급율 확인을 위한 계약 후 기초금액 산정
$\text{계약 후 기초금액 재산정} = \text{계약금액(월별 지급금액의 총합)} \div \text{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text{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 [\text{낙찰금액(계약금액)} \div \text{기초금액}] \times 100 / \text{단,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제10조(대가 청구 및 지급)

-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사가 동의하는 경우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준공대가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가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월의 인건비 지급내역서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지출 증빙자료(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③ 발주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 청구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대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할 경우 대가를 지급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급률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사유서와 향후 지급 월의 보전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기성대가를 우선 지출하되, 계약상대자가 향후 지급 월에 보전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계약상대자가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대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⑦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대가지급과 관련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강사료 등 지급 이행 최고(催告))

- ① 계약상대자가 강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발주기관이 인지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강사료 등 지급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발주기관의 이행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행최고를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최고를 하는 경우 강사료 등을 집행한다는 내용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강사료 등 미지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 특례)

- ① 계약상대자가 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대금을 청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월의 기성(준공)대가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금 총당 금액을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청구서에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월 인건비 지급 예정 내역서,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의 인건비 지급 총당 예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총당 예정 내역서를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에 비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으면 기성(준공)대가를 강사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지급된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대가청구권은 소멸한다.
- 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미지급된 강사료 등이 전액 지급될 때까지 기성(준공)대가 청구에서 해당 월의 강사료 등과 미지급 금액 총당분을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 시 발주기관의 강사료 등 직접지급 요청)

- ① 계약상대자가 인건비 지급에 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준공대가 지급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강사료 등을 강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제14조(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강사의 기성(준공)대가 채권양도의 요청)

- ①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에 발주기관은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 일반조건의 채권양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의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기성(준공)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를 7일 이내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강사와 체결한 채권양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강사에게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준공)대가를 직접 지급한다.
- ④ 계약상대자가 대가를 지급받고도 강사료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강사료에 상당하는 기성대가 채권을 강사에게 양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한다.

제15조(근로계약체결 강사의 인건비 직접 지급)

-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성(준공)대가를 30일 이상 청구하지 않고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해당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② 발주기관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청구가 있으면 5일 이내(공휴일 제외)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적정한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월 근로자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기한 내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되, 계약상대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근로자에게 지급금액을 확인하여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인건비 지급내역서를 통보한 후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④ 근로자의 인건비를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채권은 소멸한다.
- ⑤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지급받고도 근로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월의 다음 월부터 근로자가 발주기관에 인건비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및 정산)

-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 하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총액계약 시) 계약기간 중 수강 신청인원은 변동될 수 있고,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산하며, 계약내용 변동 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2. 계약상대자가 인건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인건비 이체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 3. 인건비 지급을 미준수 등 인건비 지급 확약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4.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계약상대자의 교체를 원하고, 그 요구가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5. 시정요구에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6. 기타 민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② 계약상대자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본 계약해석의 우선순위는 “갑”의 입찰 공고서, 제안요청서, 특수조건에 따르며, 해당 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소송관할) 해당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기타) “계약상대자”는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특성화 교육과정 프로그램[AI디지털] 운영을 위해 “계약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끝.